

울산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108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3. 10. 23. 접수 제113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6. 29. C에게 7,1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3가소1800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8. 23. 위 소송에서 'C이 원고에게 2023. 9.부터 2024. 10.까지 매월 말일 500,000원씩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C은 2023. 9.말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23. 10. 20.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23. 10.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아반떼 자동차(2021년식)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자동차에는 D 주식회사의 채권가액 10,25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판 단

C이 원고에게 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줌으로써 C의 적극재산으로는 담보가치가 1,750,000원에 불과한 자동차만이 남게 되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자력을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행위여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또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